

의안번호	제 1007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7일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7
----------	------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7일  
발 의 자 : 이숙애, 박형용,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정상교

**1. 제안이유**

-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의 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의 정비를 통해 용역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기술용역, 일반용역을 포함함. (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3조)
  - 기술용역, 일반용역 중 예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
- 용역 심의 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규정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2022. 3. 10. ~ 2022. 3. 15
- 다. 협 의 : 정책기획관
- 라. 비용추계 : 첨부제외 사유서

##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란 정책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용역 및 전산·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중 예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제8조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3. 기술용역 및 전산·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중 예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할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  
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  
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  
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 관계법령 및 규정 발췌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 ○ 첨부제외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 심의 시 의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안 내용에 따른 의무적·임의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